

의안번호	제877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7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조성태,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정된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의 감사기관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컨설팅감사 적용 범위(안 제3조)
 - － 1.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의 추가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
- 나. 관련부서 : 감사관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출자·출연기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u>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u> 2. (생략) 3. <u>도 출자·출연기관</u>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u>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u>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u>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 출자·출연기관</u>

관련법령 발췌

□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회 행정기관
2. 시·군 본청, 소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법인, 조합
5.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보조단체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상위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의 감사기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